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495호 2015. 8. 19.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0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3호선)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15-108호 도로명주소 고시 ..... 4

거창군 고시 제 2015-10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7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725호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및 거창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8

거창군 공고 제2015-726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22

회 람									
--------	--	--	--	--	--	--	--	--	--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56호(1977.04.25)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 2-1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5. 08. 13.

## 거창군수

### 1. 사업의 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대동리 고물상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 2-13호선) 개설공사	거창	대동	소로	2	13	165	8.0	1680	거창읍 대동리 10-50	거창읍 대동리 12-10	경고256호 (‘77.04.25)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5. 08. 13.
- 준공 예정일 : 2016. 12. 31.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7,580	1,680					
1	거창읍 대동리	10-50	도	2,423	31	-	거창군			
2	"	10-28	전	287	128	거창군 거창읍 운정2길 ***	김 * * 외1인			
3	"	10-27	전	569	14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 로3길 ***	서 * *			
4	"	10-15	전	595	227	부산 북구 구포2동 ***	정 * *			
5	"	10-16	전	417	125	부산 북구 구포2동 ***	정 * *			
6	"	10-17	전	238	10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김 * *			
7	"	10-18	전	53	1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김 * *			
8	"	13-58	전	1503	588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어스타운 ***	조 * * 외1인			
9	"	13-89	전	377	90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 로3길 ***	조 * *			
10	"	10-42	도	3584	108	-	거창군			
11	"	13-26	전	237	59	부산 북구 구포2동 ***	정 * *			
12	"	13-53	대	444	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어스타운 ***	윤 * *			
13	"	13-54	전	47	47	거창군 거창읍 동동 ***	신 * *			
14	"	13-31	대	3301	2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어스타운 ***	윤 * *			
15	"	13-57	과	1471	67	-	거창군			
16	"	13-56	대	1282	18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어스타운 ***	윤 * *			
17	"	12-10	도	752	33	-	거창군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1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셋단길 12-17 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84-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셋단길 36	2009-12-28	2015-08-17	셋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728-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3길 27-16	2009-12-28	2015-08-17	참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5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5길 3-33	2009-04-01	2015-08-17	창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96-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45	2009-04-01	2015-08-17	참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54-3	2009-04-01	2015-08-17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8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셋단길 12-17	2009-12-28	2015-08-17	셋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0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1길 269-37	2009-04-01	2015-08-17	마을 곁에 있는 아홉골에 연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595-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덕동길 1-5	2009-04-01	2015-08-17	덕유산이 마주 바라보인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9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97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금광길 15	2009-04-01	2015-08-17	마을 근처 산에 금이 많이 묻혀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10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402-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원촌1길 29	2009-04-01	2015-08-17	사액서원인 포충사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1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590-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076	2009-12-28	2015-08-17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1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54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314	2009-12-28	2015-08-17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1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52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은지밭길 170-45	2009-04-01	2015-08-17	은지밭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65-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병곡길 183	2009-12-28	2015-08-17	북상면 산수리와 병곡리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25-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521	2009-12-28	2015-08-17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1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4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동2길 16	2009-04-01	2015-08-17	강동이라 불리는 자연마을 이름에서 유래된 두번째 도로	
17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35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상울1길 60	2009-04-01	2015-08-17	상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1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743-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415	2009-12-28	2015-08-17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1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507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674	2009-12-28	2015-08-17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20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458-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상울2길 80	2009-04-01	2015-08-17	상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2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326-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27-106	2009-04-01	2015-08-17	위천에서 내려오는 영천과 모동에서 내려오는 냇물경이 합류하여 하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산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행로 352-26	2009-07-02	2015-08-17	행정구역명(월포+행정) 반영	
2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594-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새마2길 71	2009-12-28	2015-08-17	새마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2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90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655	2009-12-28	2015-08-17	행정구역명(신원면+차황면) 반영	
2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39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서부로 3433	2009-12-28	2015-08-17	합천군의 서부지역	
2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종촌리 884-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고비길 503-7	2009-04-01	2015-08-17	학이 높이 날면서 놀았다하여 이름 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 고 시 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식회사 삼성 대표 이현덕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19일

###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삼성 팰리스 아파트)
2. 사업주체
  - 가. 상 호 : 주식회사 삼성
  - 나. 대표자 : 이현덕
  - 다. 영업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119, 305호(한홍스포렉스)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11 외 9필지
  - 나. 대지면적 : 2,769.0m<sup>2</sup>
  - 다. 연 면 적 : 6,534.522m<sup>2</sup>
  - 라. 규 모 : 민영아파트 1동{60세대(분양)}, 관리실 1동
  - 마. 형 별 : 108.9087m<sup>2</sup>형별(전용 84.7184m<sup>2</sup>) 6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4월 30일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3. 주요내용
  - 근 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32조
  - 내 용 : 입법예고 대상·방법·기간, 공포문 작성요령 등
  - 통 합 :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폐 지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sun8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055)940-30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1부.  
2.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비로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

○ 공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 부분은 삭제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나. 공포번호 작성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 제3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공포하되,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이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9조(준용)** 자치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거창군 공고 제    호

거창군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자치법규명

- ※ 제정의 경우: 거창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의 경우: 거창군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폐지의 경우: 거창군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2. 주요내용

- 
- 
- 

3.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실·과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부서
- 우편번호:51032, 전화:                   , 팩스:                   이메일: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 관계법령

### □ 「행정절차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에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5.2.20.] [대통령령 제25748호, 2014.11.19., 일부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3.1.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5.]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

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훈령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거창군 훈령 제 호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5.2.20.] [대통령령 제25748호, 2014.11.19., 일부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강화
-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대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대군민 신뢰성 향상

3.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 제출에 대한 명확화 (안 제5조 제1항 관련)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 제출
-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구성 운영강화 (안 제6조 관련)
  - 군정조정위원회 대행 →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 관련 상위법 및 법령의 조항 표기 정비(안 제17조 3항, 4항 관련)

- 관련 상위법 및 자치법규 규제정비(안 제28조 제2항 관련)
  - 대부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기존 50만원 초과에 대한 내용 삭제
-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한 조항 내 일부내용 추가(안 제30조 제5항)
  -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분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신설함.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leeog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8055-940-32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전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의 주무관으로 한다.
- 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 ⑪ 심의회의 위원중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⑬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⑭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제17조제3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29조 중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p> <p>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p> <p>4. 행정재산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p>	<p>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p> <p>⑤ 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으로 한다.</p> <p>2.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의 주무관으로 한다.</p> <p>⑧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p> <p>1. 개최일시 및 장소</p> <p>2. 출석위원 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 · 심의결과</p> <p>3. 그 밖의 중요 사항</p> <p>⑪ 심의회 위원중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b>법 제27조제3항</b>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⑬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⑭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p> <p>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b>법 제27조제5항</b>-----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④ <b>법 제27조제4항</b>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 ⑥ (생략)</p> <p><b>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b></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p> <p>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p> <p>다.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b>제29조(대부료의 조정)</b>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u>100분의 10 이상</u>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b>제30조(대부료의 감면)</b> ① 영 제35조제2항 및 「<b>외국인투자 촉진법</b>」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u>&lt;신 설&gt;</u></p>	<p>④ <b>법 제27조제6항</b>-----</p> <p>-----</p> <p>-----</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b>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b></p> <p>① (생략)</p> <p>② -----</p> <p>-----</p> <p>-----</p> <p>-----</p> <p>-----</p> <p>-----</p> <p>1. -----</p> <p>-----</p> <p><u>&lt;삭 제&gt;</u></p> <p>가. -----</p> <p>-----</p> <p>나.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29조(대부료의 조정)</b> -----</p> <p>-----</p> <p><u>100분의 5 이상</u>-----</p> <p>-----</p> <p><b>제30조(대부료의 감면)</b> ① -----</p> <p>----- 「<b>외국인투자 촉진법</b>」 제13제9항-----</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b>관광진흥법</b>」 제76조제3항 및 「<b>관광진흥법 시행령</b>」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u>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u></p>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